

참가신청 계약서

1. 업체정보

※ 계약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		Tel		
				Fax		
담당자	성명		직통번호	휴대폰		
	직위		부서	E-mail		
전자세금계산서수신처 이메일				홈페이지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최근3개년)		<input type="checkbox"/>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최근3개년)		<input type="checkbox"/> 우수체육용구지정업체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산업협동조합 회원사		<input type="checkbox"/> SPOEX 3회이상 참가업체		<input type="checkbox"/> SPOEX 3회미만 참가업체 <input type="checkbox"/> SPOEX2024 수출상담회 관심여부

2. 전시품정보

전시품목	<input type="checkbox"/> HEALTH/FITNESS	<input type="checkbox"/> 헬스장비 및 기구	<input type="checkbox"/> 의류 및 소품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SPORTING GOODS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용품 및 장비	<input type="checkbox"/> 의류 및 소품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설 및 설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CAMPING CARS	<input type="checkbox"/> 카라반/트레일러	<input type="checkbox"/> 오토 캠핑카	<input type="checkbox"/> 어닝/캐리어	<input type="checkbox"/> 견인고리 및 소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OUTDOOR/CAMPING	<input type="checkbox"/> 의류 및 신발	<input type="checkbox"/> 캠핑 용품 및 장비	<input type="checkbox"/> 안전/보호용품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용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BIKES/EXTREME	<input type="checkbox"/> 자전거 완성차	<input type="checkbox"/> 부품 및 액세서리	<input type="checkbox"/> 안전/보호용품	<input type="checkbox"/> 전동 자전거/보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WATER SPORTS	<input type="checkbox"/> 다이빙 용품 및 장비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장비	<input type="checkbox"/> 수상스포츠 장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HEALTH SUPPLEMENTS	<input type="checkbox"/> 건강보조식품	<input type="checkbox"/> 스포츠뉴트리션	<input type="checkbox"/> 다이어트/뷰티	<input type="checkbox"/> 마사아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품목소개						

3. 부스신청

구분	단가	규모	금액 (VAT 별도)	비고	조립부스 장치비 제공내역(1부스 당)
조립부스	2,090,000 원/부스	부스	원	장치 공사비 포함	벽체칸막이, 부스상호간판(1EA), 부스번호판(1EA), 바닥파이텍스(9㎡), Spot light(100W), 조명용 전기(1Kw), 2구 콘센트(1EA), 안내데스크/의자, 휴지통
독립부스	1,760,000 원/부스	부스	원	1부스=3mX3m(9㎡)	

※ 독립부스의 경우 바닥 면적만 제공됩니다. 부대시설(전기, LAN, 급배수)등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독립부스는 2부스(18㎡)이상 신청가능

4. 참가비 납입계좌 및 기한안내

참가비 납입계좌 : 케이웨이스(주) / KEB하나은행 / 250-890002-78004

참가비(계약금) 납입기한 : 사무국승인 후 1주일내(총합계의 50%)

참가비(잔금) 납입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전액납입

참가비 지체상금: 기한내 참가비 납입이 안될경우 지체상금이 매일 단위로 추가 됩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 참가비 연체금액 * 연체일수 / 365일 * 12%

소음규정 안내 *□안에 체크 필히 해주세요.

- 전시자는 전시장 내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음향의 세기는 주최측 측정기준으로 90db이하로 조정한다.
- 전시자는 스피커의 방향을 복도가 아닌 해당 전시자의 부스 내로 향하도록한다.

당사는 SPOEX2024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이면수록)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일자: . . . 계약담당자: (인) 대표자: (인)

-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 본 계약서에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안내를 위하여 활용됩니다.
- SPOEX2024 사무국의 확인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SPOEX2024 사무국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202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24)"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계약서로서 준용되어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진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 주최자는 참가비를 완납한 전시자에 한하여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계약 순서,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한다.
- 주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공사 전에 전시자에게 계약된 부스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공간(부스)사용

- 전시공간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사용시간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때는 시간의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시간의 사용 산출법: 작업시간×1,000,000원(VAT별도))
-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전시하고 행사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주최자는 동 사실을 전시자에게 3회 고지한 후 불응 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혹은 제 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제5조 전시품의 실연 및 현장 직매행위

-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직매할 수 없으며 직매를 원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시자는 해당 부스내에서 전시품의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해당 부스 외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효력을 위한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없다.
-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을 위하여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타 전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음향의 세기는 90db 이하로 하여야 하며 스피커의 방향을 해당 전시자의 부스내로 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전원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은 타 전시자 및 참관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주최자는 이를 위하여 전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제한,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납입

- 참가비는 부스 임차비와 관리비용(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을 말한다.
- 전시자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모든 참가비를 전시회 규정에서 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총 참가비의 50%): 신청서 제출 및 사무국 승인 후 일주일 이내 납부
나. 잔금(관리비용 포함 참가비 50%):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납부

-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참가비 납부를 지체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연체료를 적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비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해당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7조 위약 및 해약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아래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가. 전시회개최 3개월 이전취소: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나. 전시회개최 1개월 이전취소: 참가비의 전액(100%)을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 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전염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 등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 되거나 축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9조 부스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계약된 전시면적에 장치공사 기간까지 부스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중량물의 전시는 전시장의 지반구조에 따라 3ton이상인 전시품의 경우 전시회 사무국 및 코엑스(COEX)와 사전협의를 거쳐 반입 및 진열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철거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해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시품에 대한 재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책임으로 한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